



【검토보고서】

2017. 11. 20(월)
제 286 회 임시회

양주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양주시의회
Yangju City Council

【전문위원 김영현】

양주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과

- 가. 제안자 : 양주시장(복지지원과장)
- 나. 제출일 : 2017년 11월 15일

2. 제안이유

- 장애아동의 문제개선 및 발달 향상을 위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 「양주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의 위탁기간이 2017.12.31. 만료 됨에 따라 민간 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 치 : 양주시 평화로1435번길 5-3(덕계동, 정산빌딩)
- 시설규모 : 323.10㎡ (3층 전부)
- 이용대상 : 자폐성 및 지적장애 등을 가진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주요사업내용 : 음악, 미술, 놀이, 인지, 언어치료 등
- 소요인력 : 8~11명(사회복지사, 특수교사,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심리치료사 등)
- 사 업 비 : 80,000천원(도비 32,000, 시비 48,000)
- 現 위탁현황
 - 위탁기관 : 사단법인) 경기도 장애인재활협회
 - 위탁기간 : 2015. 1. 1. ~ 2017. 12. 31.(3년)
 - 2008.12.19. : 최초 협약체결
 - 2009.01.01. ~ 현재 : 양주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위탁 운영
 - 2017.11.06. : 수탁종결의사 통지
 - 직원현황 : 상근 2명(센터장 1, 사회복지사 1), 비상근 8명(치료사)

4. 검토의견

가. 민간위탁 근거 및 관계 법령

- 본 동의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하는 양주시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이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임.

※ 관계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 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위임 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나. 양주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위탁 타당성

1) 민간위탁의 목적

- 해당시설은 덕계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애아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재활치료실 및 사무실 등이 설치되어 있고 연간 80,000천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음.
- 현재 위탁운영중에 있는 “경기도 장애인재활협회”의 수탁종결의사 타진에 따라 새로이 위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것으로 도내 운영중인 장애아재활치료시설은 총 20개소로, 재활협회에서 직접설치 운영중인 11개소의 시군자체 운영 9개소 모두 위탁운영중에 있음.

※ 운영현황

▸ 위탁시설현황

위 치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1435번길 5-3(덕계동, 정산빌딩)		
면 적	323.10㎡ (3층 전부)		
용 도	사무실, 부모대기실, 치료실(운동·놀이·감각통합 등), 자료실 외		
임대계약	보증금(200,000천원), 월 임대료 800천원(자부담)		
운영보조금 지원현황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80,000천원 (도비 40%, 시비 60%)	80,000천원 (도비 40%, 시비 60%)	80,000천원 (도비 40%, 시비 60%)

▸ 현 위탁업체 현황

위탁자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대표 이근창)
위탁기간	2015. 1. 1 ~ 2017. 12. 31. (3년) ※ 2008.12.19. 최초 협약체결
종사자	상근 2명(센터장 1, 사회복지사 1), 비상근 14명(치료사)

▸ 이용현황(2016)

(단위: 명)

구분	계	인지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음악치료	안아치료	감각통합	운동치료	심리상담	그룹치료
인원	907	78	105	118	132	183	93	88	28	82

※ 위탁계획

- 위탁방법 : 공모를 통한 운영자 선정
- 위탁기간 : 2018. 1. 1. ~ 2022. 12. 31. (5년)
- 신청자격
법인주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로서 공고일 현

재 정관에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고 장애아 재활치료사업 수행능력과 재정 능력이 있는 법인 및 단체

- 위탁사무

구 분	위탁사무
주요 업무	1. 놀이, 음악, 미술, 인지, 작업, 감각통합, 언어, 운동, 사회재활 프로그램 등 2. 장애아동 부모대상 및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 운영 3. 기타 다양한 장애아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 경기도내 시설현황

시 군	주 소	개원일자	전화번호	근무인력(명)		운영기관 (센터장)
				직원	치료사	
계	20개소(재활협회 운영 11, 시군 위탁 9)	-	-	4	14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424번길 8	'08.04.30.	333-7275	2	4	사회복지법인 조이하트
평택시	서정역로 36번길 24-10 성림빌딩 5층	'04.03.02.	665-2128	2	10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시흥시	시청로 68번길 14, 2층 (장현동, 주호빌딩)	'06.02.23.	435-2060	2	5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화성시	송산면 사강시장길 26	'06.03.17.	369-2898	5	4	동남보건대학교산학협력단
광주시	경안로 7, 5층 (경안동, 대명빌딩)	'11.03.31.	798-7982	2	10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이천시	중리천로 72번길 2, 4층 (중리동, 이천산림조합)	'03.05.02.	637-2177	2	8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김포시	사우중로 100 (사우동)	'12.01.02.	989-8662	2	10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안성시	장기로 8, 5층 (석정동)	'09.03.02.	675-0075	2	7	사회복지법인 한길
하남시	덕풍천서로9 (신장동)	'08.12.01.	790-2900	3	12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의왕시	오전공업길13 105호	'07.09.21.	455-5613	3	8	코스모스복지재단
오산시	오산로272번길 37	'17.03.06.	375-5001	3	13	오산시 장애아 재활 치료교육센터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 174-1, 5층	'06.02.22.	775-6210	2	6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61번길 77, 205호 (장항동, 한신메트로폴리스)	'04.04.12.	917-7866	2	11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남양주	금곡로 50, 7층 (금곡동, 양주빌딩)	'04.05.25.	511-4818	2	10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의정부	호국로 1290, 201호 (의정부1동, 정우오피스텔)	'02.02.28.	826-6608	2	16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파주시	금빛로 24-22, 401호 (금촌동, 굿닥터스빌딩)	'06.11.02.	949-9425	2	12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구리시	이문안로 86, 2층 (수택3동, 수평빌딩)	'07.08.31.	562-1101	2	12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
포천시	구절초로 33, 4층 (신읍동, 신용빌딩)	'06.11.08.	536-1421	2	7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양주시	평화로 1435번길 1, 3층 (덕계동, 정산빌딩)	'08.12.19.	865-1147	2	8	시에서 재활협회 위탁
동두천	중앙로 116, 504호 (지행동, 두손프라자)	'05.09.27.	864-0018	2	7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2) 위탁 및 직영 비교

- 시에서 직영할 경우 양주시 공무원 기준인건비의 제한을 받게 되며, 재활시설 운영 관리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인건비 상승 등 시설 운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전문기관 또는 전문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 인건비 비교

- ① 위탁운영시= 사회복지기관 호봉제

(단위 : 원, 명)

구 분	호봉	단가	인원	월	금 액
사무국장	일반3급10호	2,539,000	1	12	30,468,000
사회복지사2급	일반4급5호	1,917,920	1	12	23,015,000
합 계			2		53,483,000

- ② 직영시= 전임계약직 연봉제 ※ 임기제공무원 연봉 하한액 적용

(단위 : 원, 명)

구 분	호봉	단가	인원	월	금 액
사무국장	"나급"(6급)	3,751,000	1	12	45,017,000
사회복지사2급	"라급"(8급)	2,879,000	1	12	34,554,000
합 계			2		79,571,000

다. 종합검토 의견

- 최근 늘어가는 사회복지 수요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증가는 방대한 사업량 및 인력을 필요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사회복지사업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며, 인건비 절감 및 전문성 제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전문기관 및 법인 등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위탁기간 및 수탁자 자격 등 공개모집에 따른 법적 위배사항은 없으며, 장애재활 치료에 관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위탁시설 정상 운영·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수탁자 선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관계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2016년 양주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보조금 정산서

(단위:원)

관	항	목	이월금액	교부액 (예산액)	정산액 (집행액)	잔액
총계			0	80,000,000	80,000,000	-
사무비	인건비	소계	0	72,760,230	72,760,230	-
		급여	-	55,800,000	55,800,000	-
		제수당	-	6,300,000	6,300,000	-
		퇴직적립금	-	5,175,000	5,175,000	-
		사회보험부담금	-	5,485,230	5,485,230	-
	운영비	소계	0	264,000	264,000	-
		수용비및수수료	-	264,000	264,000	-

※ 양주시 예산전용 승인(복지지원과-10385 “2016년도 양주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전용 승인 통보”) 요청을 통하여 예산집행. 이에 과목전용조서 및 승인통보문서 붙임자료 첨부.

2016년 양주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사업별 정산서

(단위:원)

관	항	목	보조금 사업	법인 전입금 사업	실비유료 사업	장애아동 발달지향 서비스 사업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사업	교육청 '늘어남 학교' 사업	공동 모금회 기능보강 사업	아이들과 미래지원 사업
잔액			6,962	2,204,611	6,326,373	19,308,498	1,858,074	5,495	524	0
수입총계			80,006,962	8,801,901	79,919,042	157,289,976	3,552,399	7,004,644	4,570,524	3,000,000
수입	전년이월금		4	800,924	11,537,729	10,810,722		2,804,318	-	-
	보조금		80,000,000	-	-	-	-	-	-	-
	기타보조금		-	-	-	-	-	4,200,000	4,570,000	3,000,000
	사업수입		-	-	68,372,300	146,466,300	3,552,000	-	-	-
	지정후원금		-	-	-	-	-	-	-	-
	법인전입금		-	8,000,000	-	-	-	-	-	-
	예금이자		6,968	977	9,013	12,954	399	326	524	-
	잡수입		-	-	-	-	-	851	-	-
지출총계			80,000,000	6,997,290	73,982,669	137,981,483	1,694,325	7,000,000	4,570,524	3,000,000
사무비	소계		80,000,000	6,997,290	7,182,048	40,039,916	-	-	-	-
	인건비	급여	55,800,000	-	-	12,984,000	-	-	-	-
		재수당	6,300,000	-	-	12,111,308	-	-	-	-
		퇴직적립금	5,175,000	-	-	1,302,666	-	-	-	-
		사회보험부담금	5,485,230	-	-	1,095,940	-	-	-	-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비	-	100,000	-	1,277,150	-	-	-	-
		직책보조비	-	-	-	2,400,000	-	-	-	-
		회의비	-	122,000	-	169,500	-	-	-	-
	운영비	여비	-	723,630	-	-	-	-	-	-
		수용비및수수료	264,000	-	5,057,878	1,134,567	-	-	-	-
		공공요금	-	4,312,760	2,124,170	168,060	-	-	-	-
		제세공과금	-	1,338,900	-	-	-	-	-	-
		교육참가지원비	-	-	-	512,500	-	-	-	-
		기타운영비	6,975,770	-	-	-	-	-	-	-
	임대료	-	-	-	6,884,230	-	-	-	-	
사업비	소계		-	-	66,410,621	97,941,567	1,694,325	7,000,000	4,570,524	3,000,000
	사업비	치료교육사업비	-	-	66,410,621	97,941,567	1,694,325	7,000,000	4,570,524	3,000,000
예비비 및기타	소계		-	-	-	-	-	-	-	-
	예비비 및기타	예비비	-	-	-	-	-	-	-	-
		반환금	-	-	-	-	-	-	-	-

※ 집행잔액은 2016년 예산에 편입하여 사용 예정
 ※ 보조금 예금이자(6,962원)는 2017년 1분기 중 양주시로 반환 예정